|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실시방법**  해관총서령 제23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 실시방법>이 2016년 9월 22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위광저우(于廣洲)  2016년 9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査)조례>(이하 '<조사조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조사조례> 제3조에 규정한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에는 다음 각 호의 기업•조직이 포함된다.  (1)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조직;  (2) 대외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3) 보세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4) 세금감면 대상 수출입화물을 사용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조직;  (5) 통관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6) 수출입화물의 실제 송수화인;  (7)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기업•조직.  제3조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하 '수출입기업•조직'으로 통칭)의 다음 수출입 활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1) 수출입 신고;  (2) 수출입관세 및 기타 세금, 공과금의 납부;  (3) 수출입허가증 및 관련 서류의 검사;  (4) 수출입화물 관련 자료의 작성•보관;  (5) 보세화물의 수입, 사용, 저장, 수리, 가공, 판매, 운송, 전시 및 재수출;  (6) 세금감면 대상 수출입화물의 사용•관리;  (7) 기타 수출입 활동.  제4조 세관은 조사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현장조사, 방문상담, 서신문의, 온라인 조사 및 의뢰조사 등 방식으로 관련 업계협회, 정부부서와 관련 기업 등을 상대로 무역 조사를 전개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정부부서의 감독관리 정보;  (2) 특정 업종•기업의 주요 상황, 무역 관습, 생산경영, 시장구조 등 정보;  (3) 특정 상품의 구조, 성분, 등급, 기능, 용도, 제조공정•절차, 작업원리 등 기술적 지표 또는 기술변수 및 가격 등 정보;  (4)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  관련 정부부서, 금융기구, 업계협회와 관련 기업 등은 세관의 무역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장부•서류 등 자료의 관리  제5조 수출입기업•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장부, 회계증빙,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자료를 설치, 작성 및 보관하고 내부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수출입 활동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온전하게 기록 및 반영하여야 한다.  수출입기업•조직은 수출입 활동이 진실하게 반영된 원시 서류와 기록 등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입기업•조직은 <조사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신고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및 기타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료 또는 전자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세관 조사의 실시  제7조 세관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등록지 세관이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의 등록지가 화물 통관지 또는 반출입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 또는 반출입지의 세관이 실시할 수도 있다.  해관총서는 하급 세관을 지정하거나 조직하여 다지역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속세관은 하급 세관을 지정하거나 조직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세관 조사는 조사 집법(執法) 자격을 갖춘 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 시 조사 대상자에게 세관조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기 3일 전에 <세관 조사 통보서>를 작성하여 조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세관이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에 <세관 조사 통보서>를 작성하여 조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은 회피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와 근친 관계인 경우;  (2)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 또는 그의 근친이 조사 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3)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 또는 그의 근친이 조사 대상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세관 조사 업무의 정상적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세관이 기피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조사 담당인력은 조사 업무의 집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의 회계장부, 회계증빙, 세관신고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이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로 통칭)를 열람•등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이하 '조사 대상자의 대표'로 통칭)는 현장에 출두하여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세관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등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표는 등사본과 원본이 일치함을 확인한 후 등사본에 자료의 출처, 페이지수, 등사시간 및 '대조확인 결과 원본과 일치함'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외국어로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우 세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중문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대상자가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현대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경영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전자 데이터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오픈하고 사용설명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전자 데이터를 복제하는 경우 제작방법, 제작시간, 제작인, 데이터 내용 및 원시 캐리어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후 제작인 및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서명•날인한다.  제13조 조사 대상자의 소재 장소에 열람•등사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다.  기타 장소에서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은 <세관 조사 수거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가 점검•검토한 후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고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세관 조사 수거 심사서>에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에 출두하여 수출입 활동과 연관된 생산경영 상황과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대표는 현장에 출두하여 세관의 요구에 따라 장소를 오픈하고 화물을 이동하며 화물의 포장을 개봉•재포장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는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고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검사기록>에 서명•날인한다.  제15조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를 신문하는 세관 조사 담당인력은 <신문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문인, 기록인 및 피신문인이 <신문기록>에 서명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와 재무 왕래 또는 기타 비지니스 왕래가 있는 기업•조직을 상대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서류와 증명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조직은 세관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세관은 <조회 협조 통보서>를 소지하여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8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훼기할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개물을 차압•압류할 수 있다.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수출입 활동이 세관법 또는 기타 법률•행정법규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수출입화물을 차압•압류할 수 있다.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차압•압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 대상자가 <조사조례> 제30조, 제31조에 열거된 행위 중의 하나를 행한 경우 세관은 <세관의 기한부 시정 통보서>를 작성 및 송달하여 시정의 내용과 기한을 조사 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시정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세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그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팀은 조사 대상자의 불법 또는 세금 탈루 혐의를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의견을 조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팀은 조사를 실시한 후 세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내에 <세관 조사 결론>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세관 관장 또는 그가 권한을 부여한 예속세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세관은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2) 조사 댕사자가 종료되었고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을 경우.  제23조 세관은 조사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를 이전, 은닉, 변조, 훼기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상황을 조사 대상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또는 기타 회계•세무 등 관련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전문기구에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결론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 결론은 세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조사의 사실 인정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도출한 전문 결론은 세관 조사의 참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세관이 전문기구에 의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의뢰사항 및 권리•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구가 결론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관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주관부서 또는 업계협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자진 공개  제25조 수출입기업•조직이 자진하여 그의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행위를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세관의 처리를 받은 경우 세관은 해당 기업•조직이 자진 공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 보고하기 전에 세관이 이미 불법 단서를 확보한 경우;  (2) 보고하기 전에 세관이 이미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실시를 통보한 경우;  (3) 보고내용이 사실과 엄중하게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숨긴 경우.  제26조 자진 공개하는 수출입기업•조직은 장부•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온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세관은 수출입기업•조직이 자진 공개한 보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게 관련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수출입기업•조직이 자진 공개한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세관은 가벼운 행정처벌을 내리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 시정이 이뤄졌으며 피해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자진 공개하고 세금을 보충납부한 수출입기업•조직의 경우 세관은 그의 체납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부칙  제28조 이 방법에 규정한 '일'은 모두 달력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서 송달 또는 기간 시작일 당일은 해당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일이 휴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휴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 끝난 후 첫번째 근무일까지 연장한다.  제29조 조사 대상자가 조사문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세관은 증인을 현장으로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한 후 해당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증인과 최소한 2명의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한 후 조사문서를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세관은 조사문서를 조사 대상자의 경영장소에 유치하고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 방식으로 그 전체 과정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조사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관련 증거자료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세관의 조사 담당인력은 관련 자료상에 해당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한 2명의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세관의 열람•등사•검사 실시 현장에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해당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최소한 2명의 세관 조사 담당인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방법에 규정한 서명•날인이라 함은 조사 대상자의 대표가 서명하거나 추가로 조사 대상자의 공인을 날인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32조 이 방법에 사용하기로 규정한 조사문서는 해관총서가 별도로 공표한다.  제33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4조 이 방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1월 11일 해관총서령 제79호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조례>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  海关总署令第230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已于2016年9月22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11月1日起施行。  署长 于广洲  2016年9月2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有效实施《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以下简称《稽查条例》），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及相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稽查条例》第三条所规定的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包括：  （一）从事对外贸易的企业、单位；  （二）从事对外加工贸易的企业；  （三）经营保税业务的企业；  （四）使用或者经营减免税进口货物的企业、单位；  （五）从事报关业务的企业；  （六）进出口货物的实际收发货人；  （七）其他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  第三条 海关对与进出口货物直接有关的企业、单位（以下统称进出口企业、单位）的下列进出口活动实施稽查：  （一）进出口申报；  （二）进出口关税和其他税、费的缴纳；  （三）进出口许可证件和有关单证的交验；  （四）与进出口货物有关的资料记载、保管；  （五）保税货物的进口、使用、储存、维修、加工、销售、运输、展示和复出口；  （六）减免税进口货物的使用、管理；  （七）其他进出口活动。  第四条 海关根据稽查工作需要，可以通过实地查看、走访咨询、书面函询、网络调查和委托调查等方式向有关行业协会、政府部门和相关企业等开展贸易调查，收集下列信息：  （一）政府部门监督管理信息；  （二）特定行业、企业的主要状况、贸易惯例、生产经营、市场结构等信息；  （三）特定商品的结构、成份、等级、功能、用途、工艺流程、工作原理等技术指标或者技术参数以及价格等信息；  （四）其他与进出口活动有关的信息。  有关政府部门、金融机构、行业协会和相关企业等应当配合海关贸易调查，提供有关信息。  第二章 账簿、单证等资料的管理  第五条 进出口企业、单位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以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设置、编制和保管会计账簿、会计凭证、会计报表和其他会计资料，建立内部管理制度，真实、准确、完整地记录和反映进出口活动。  进出口企业、单位应当编制和保管能够反映真实进出口活动的原始单证和记录等资料。  第六条 进出口企业、单位应当在《稽查条例》第二条规定的期限内，保管报关单证、进出口单证、合同以及与进出口业务直接有关的其他资料或者电子数据。  第三章 海关稽查的实施  第七条 海关稽查由被稽查人注册地海关实施。被稽查人注册地与货物报关地或者进出口地不一致的，也可以由报关地或者进出口地海关实施。  海关总署可以指定或者组织下级海关实施跨关区稽查。直属海关可以指定或者组织下级海关在本关区范围内实施稽查。  第八条 海关稽查应当由具备稽查执法资格的人员实施，实施稽查时应当向被稽查人出示海关稽查证。  第九条 海关实施稽查3日前，应当向被稽查人制发《海关稽查通知书》。  海关不经事先通知实施稽查的，应当在开始实施稽查时向被稽查人制发《海关稽查通知书》。  第十条 海关稽查人员实施稽查时，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  （一）海关稽查人员与被稽查人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有近亲属关系的；  （二）海关稽查人员或者其近亲属与被稽查人有利害关系的；  （三）海关稽查人员或者其近亲属与被稽查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海关稽查工作正常进行的。  被稽查人有正当理由，可以对海关稽查人员提出回避申请。但在海关作出回避决定前，有关海关稽查人员不停止执行稽查任务。  第十一条 海关稽查人员查阅、复制被稽查人的会计账簿、会计凭证、报关单证以及其他有关资料（以下统称账簿、单证等有关资料）时，被稽查人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或者其指定的代表（以下统称被稽查人代表）应当到场，按照海关要求如实提供并协助海关工作。  对被稽查人的账簿、单证等有关资料进行复制的，被稽查人代表应当在确认复制资料与原件无误后，在复制资料上注明出处、页数、复制时间以及“本件与原件一致，核对无误”，并签章。  被稽查人以外文记录账簿、单证等有关资料的，应当提供符合海关要求的中文译本。  第十二条 被稽查人利用计算机、网络通信等现代信息技术手段进行经营管理的，应当向海关提供账簿、单证等有关资料的电子数据，并根据海关要求开放相关系统、提供使用说明及其他有关资料。对被稽查人的电子数据进行复制的，应当注明制作方法、制作时间、制作人、数据内容以及原始载体存放处等，并由制作人和被稽查人代表签章。  第十三条 被稽查人所在场所不具备查阅、复制工作条件的，经被稽查人同意，海关可以在其他场所查阅、复制。  海关需要在其他场所查阅、复制的，应当填写《海关稽查调审单》，经双方清点、核对后，由海关稽查人员签名和被稽查人代表在《海关稽查调审单》上签章。  第十四条 海关稽查人员进入被稽查人的生产经营场所、货物存放场所，检查与进出口活动有关的生产经营情况和货物时，被稽查人代表应当到场，按照海关的要求开启场所、搬移货物，开启、重封货物的包装等。  检查结果应当由海关稽查人员填写《检查记录》，由海关稽查人员签名和被稽查人代表在《检查记录》上签章。  第十五条 海关稽查人员询问被稽查人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时，应当制作《询问笔录》，并由询问人、记录人和被询问人签名确认。  第十六条 海关实施稽查时，可以向与被稽查人有财务往来或者其他商务往来的企业、单位收集与进出口活动有关的资料和证明材料，有关企业、单位应当配合海关工作。  第十七条 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海关可以凭《协助查询通知书》向商业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查询被稽查人的存款账户。  第十八条 海关实施稽查时，发现被稽查人有可能转移、隐匿、篡改、毁弃账簿、单证等有关资料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封、扣押其账簿、单证等有关资料及相关电子数据存储介质。  海关实施稽查时，发现被稽查人的进出口货物有违反海关法或者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嫌疑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查封、扣押有关进出口货物。  海关实施查封、扣押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以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  第十九条 被稽查人有《稽查条例》第三十条、第三十一条所列行为之一的，海关应当制发《海关限期改正通知书》，告知被稽查人改正的内容和期限，并对改正情况进行检查。  被稽查人逾期不改正的，海关可以依据海关相关规定调整其信用等级。  第二十条 稽查组发现被稽查人涉嫌违法或者少征、漏征税款的，应当书面征求被稽查人意见，被稽查人应当自收到相关材料之日起7日内提出书面意见送交稽查组。  第二十一条 稽查组实施稽查后，应当向海关报送稽查报告。海关应当在收到稽查报告之日起30日内作出《海关稽查结论》，并送达被稽查人。  第二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海关可以终结稽查：  （一）被稽查人下落不明的；  （二）被稽查人终止，无权利义务承受人的。  第二十三条 海关发现被稽查人未按照规定设置或者编制账簿，或者转移、隐匿、篡改、毁弃账簿的，应当将有关情况通报被稽查人所在地的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  第二十四条 海关实施稽查时，可以委托会计师事务所、税务师事务所或者其他具备会计、税务等相关资质和能力的专业机构，就相关问题作出专业结论，经海关认可后可以作为稽查认定事实的证据材料。被稽查人委托专业机构作出的专业结论，可以作为海关稽查的参考依据。  海关委托专业机构的，双方应当签订委托协议，明确委托事项和权利义务等。  专业机构有弄虚作假、隐瞒事实、违反保密约定等情形的，海关应当如实记录，作出相应处置，并可以通报有关主管部门或者行业协会。  第四章 主动披露  第二十五条 进出口企业、单位主动向海关书面报告其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并接受海关处理的，海关可以认定有关企业、单位主动披露。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一）报告前海关已经掌握违法线索的；  （二）报告前海关已经通知被稽查人实施稽查的；  （三）报告内容严重失实或者隐瞒其他违法行为的。  第二十六条 进出口企业、单位主动披露应当向海关提交账簿、单证等有关证明材料，并对所提交材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  海关应当核实主动披露的进出口企业、单位的报告，可以要求其补充有关材料。  第二十七条 对主动披露的进出口企业、单位，违反海关监管规定的，海关应当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违法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不予行政处罚。  对主动披露并补缴税款的进出口企业、单位，海关可以减免滞纳金。  第五章 附 则  第二十八条 本办法所规定的“日”均为自然日。文书送达或者期间开始当日，不计算在期间内。期间届满的最后一日遇休息日或者法定节假日的，应当顺延至休息日或者法定节假日之后的第一个工作日。  第二十九条 被稽查人拒绝签收稽查文书的，海关可以邀请见证人到场，说明情况，注明事由和日期，由见证人和至少两名海关稽查人员签名，把稽查文书留在被稽查人的生产经营场所。海关也可以把稽查文书留在被稽查人的生产经营场所，并采用拍照、录像等方式记录全过程，即视为被稽查人已经签收。  第三十条 被稽查人代表对相关证据材料不签章的，海关稽查人员应当在相关材料上予以注明，并由至少两名海关稽查人员签名。  海关实施查阅、复制、检查时，被稽查人代表不到场的，海关应当注明事由和日期，并由至少两名海关稽查人员签名。  第三十一条 本办法所规定的签章，是指被稽查人代表签名或者加盖被稽查人印章。  第三十二条 本办法所规定使用的稽查文书由海关总署另行公布。  第三十三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四条 本办法自2016年11月1日起实施。2000年1月11日海关总署令第79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同时废止。 |